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단5296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7. 2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9. 12. 12. 접수 제337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10.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32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C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여 2020. 2.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0. 3. 31.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E은행에게 325,324,0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 C를 상대로 하여 위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시법원 2020차전34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5. 8. '소외 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748,999원 및 그 중 324,755,977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결정은 2020. 9. 30. 확정되었다.

마. 한편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부동산의 1/4 지분권자이자 이복형제지간인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0.자 매매계약(거래가액 1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9. 12. 12. 접수 제3376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326,748,999원의 구상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나주시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3. 31. 원고의 C에 대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기는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C 사이에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이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2020. 2. 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0. 3. 31. 위와 같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살피건대,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되어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C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더 이상 선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어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1,000만 원에 매도한 것인데, 당시 피고는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위 주장내용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수익자인 피고 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부 동 산 의 표 시

전라남도 나주시
임야 6832㎡

이상 4 분지 1 공유자 지분전부
(광주지방법원 나주동기소 관할)

